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. 11. 6 선고 2024가단239592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호 담당변호사 김연진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10. 2.

판 결 선 고 2024. 11. 6.

주 문

1.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7. 1.부터 2024. 9. 21.까지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다만, 채권자는 '원고', 채무자는 '피고'로 본다).

2. 적용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강종선

별지